

# 노동권 침해, 스스로 대처하기

공인노무사 김희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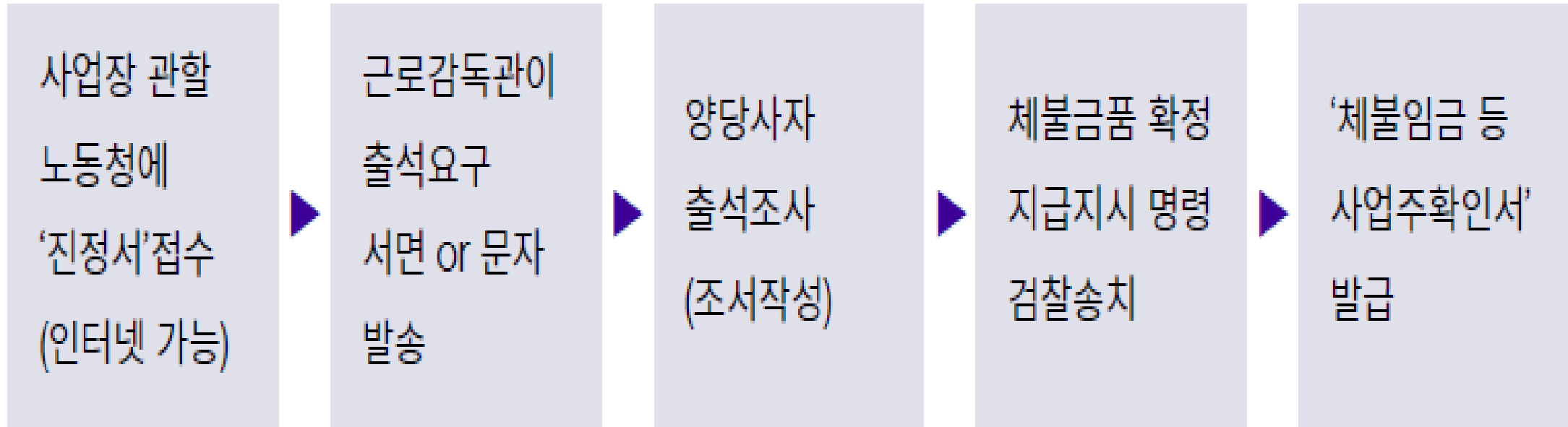
# 임금체불과 권리구제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기



## 임금체불 진정

- 노동부에 임금 체불을 신고하면, 회사에서 제가 신고한 것을 알게 되나요?
- 노동부에 출석 조사를 받으시 가야 되나요?
- 출석 조사때 사장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만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돈을 받아주나요?
- 체불임금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노동부에 신고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기는 했는데, 사업주가 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정 처리 절차

라. "을"이 본 계약기간을 위반 시에는 "갑"은 CU본사와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                    ) 점을 반드시 정상화 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을"을 대신하여 근무할 신규 근무자를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며, 그 채용과 관련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함) 그 항목은 신규채용기간 동안 들어간 "갑"의 비용 즉, 인수자 교육기간 발생된 총 교육비, 채용공고 등록비(알바몬 기준), 신규채용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손해금액, 면접비 등이고, 금액은 아래와 같다.

- ① 인수자 교육기간 발생된 총 교육비(시급+주휴수당): 금 214,510 원으로 하여 퇴사월 급여에서 차감한다.
- ② 기타: 신규채용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손해금액, 면접비 등

위 금액은 "을"이 지급받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단,                    점 모집공고에서 정한 최소 근무기간 7개월 이상을 "을"이 근무하였을 경우에 별도의 공제금액은 없다).

만약 "을"이 이를 거절할 경우 "갑"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을"에게 위 금액 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 진정 처리 절차

### 5. 사직기간 준수 및 인수인계

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나오지 않으면 야반도주로 위법이다. 근무자는 사직통고 자유는 있지만

근무자 충원이 완료 된 후 인계까지 마쳐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나. 1-가에서 "갑"과 "을"이 정한 기본근무 개월 수가 지난 후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지속

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최소1개월 전에 "갑"에게 퇴사를 통보함이 원칙이고 만약, 1-가에서 "갑"과

"을"이 정한 기본근무 개월 수가 도래하기 전에 "을"의 급격한 사정으로 근무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에는 24시간 영업을 지속해야만 하는 CU본사와의 프랜차이즈계약 관계상 반드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를 마치고 퇴사해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갑"은 "을"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손

해배상청구(지급명령신청서 및 내용증명 우편발송)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노동부 신고 종류

## 진정

-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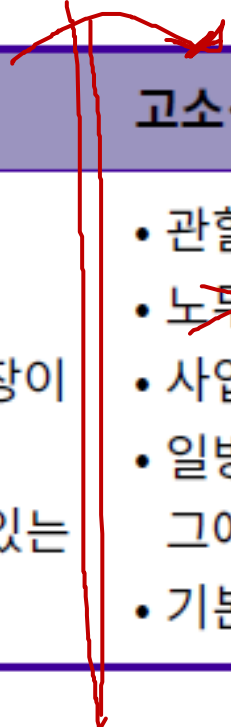
## 고소

-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 업무와 관련하여



## 고발

-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 업무와 관련하여



진정제기	고소·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민원처리</li> <li>• <u>도무사</u> 대리가능</li> <li>• 일방의 불출석이 지속되거나 양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면 사건이 수개월 이상 지연</li> <li>• 기본처리기간: <u>25일</u> (1회 연장가능,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상 연장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지휘, 감독</li> <li>• <del>노무사</del> 대리 불가</li> <li>• 사업주의 <u>3회 이상 불출석시</u> 수배가능</li> <li>• 일방의 주장으로 체불금품이 확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가능</li> <li>• 기본처리기간: 2개월 (검사의 지휘로 연장가능)</li> </ul>





# 진정서 작성 방법

## <서식>

- 법에서 정한 공식 서식은 없음
- 노동부에서 게시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당사자>

- 진정인(=근로자) / 피진정인(=사업주 / 체불당시의 사장, 대표자)

## <작성내용>

- 진정 내용은 별지를 이용해서, 상세히 기재

(당사자관계, 근로조건, 사건경위, 법위반내용, 임금체불금액)



# 노동부는 가까이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



자주찾는 검색어 임금 퇴직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성보호

민원정보

민원신청

민원확인

이용안내

모바일 민원마당

전체보기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질의민원 >

신고센터 >

빠른인터넷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자주 신청하는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서식민원



- 각종 진정·신고 등 지정된 서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검색되지 않거나 오프라인으로만 접수되는 서식들은 민원24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민원분류

분야별 전체민원보기 >

전체

일자리지원

고용보험

직업능력

고용평등

고용안정

노사협력

근로기준

산재예방

외국인력

일반행정

전체(248건)

전체

검색 >

10개씩 보기

서식파일은 방문·우편·팩스를 통한 접수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민원마당 신청

신청

연계사이트 신청

번호	민원서식명	민원분류	처리기간	서식파일	신청
248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기준	25일		신청







# 진정서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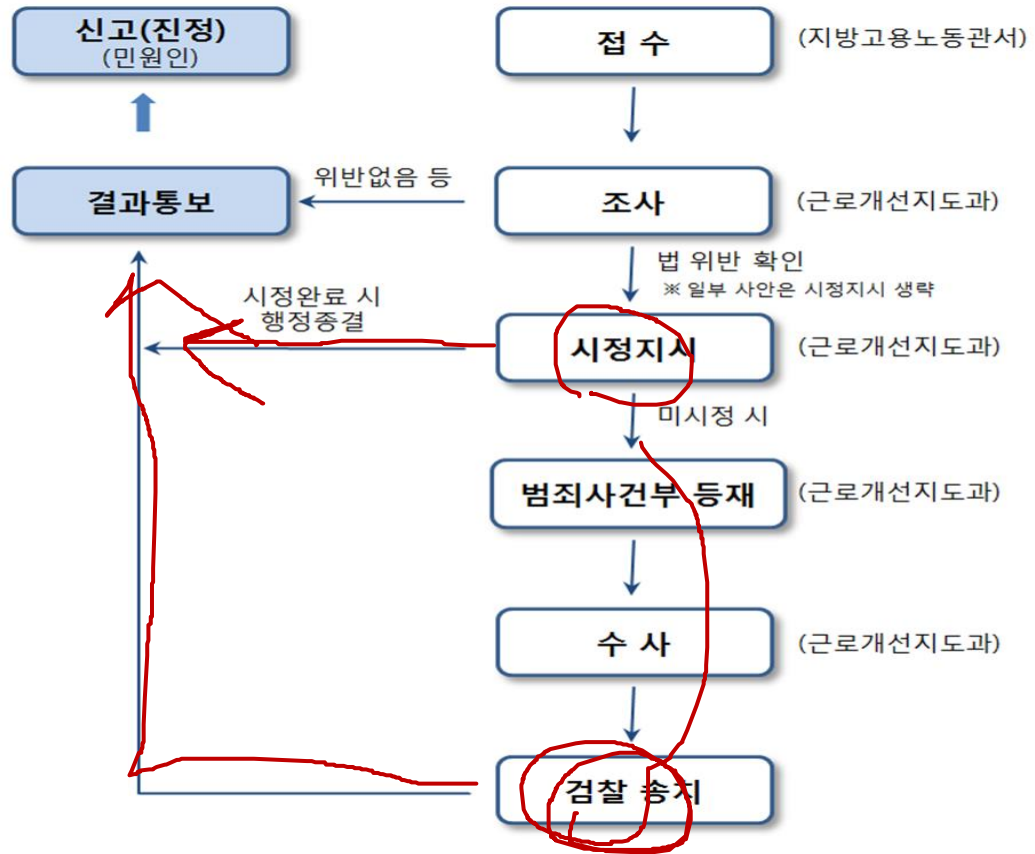
(뒤쪽)

## 작성방법

- ①란에는 피진정인 인적사항 등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에 한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②란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또는 상위 수급인을 신고하고자 할 때 적습니다.
- 1)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직상 수급인: 하도급을 준 사업주가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하도급업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내용대로 원자재 공급을 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하도급을 준 사업주(직상 수급인)를 신고하고자 할 때 작성
    -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업종이 해당
  -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곳에서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속칭 전문시공업자, 오야지 팀장 등)이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하도급을 준 바로 위 단계의 건설업자를 신고하고자 할 때 작성
    - \* 건설공사에서만 해당
- ③란에는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 근무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④란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또는 상위 수급인의 사업장 정보를 적습니다.
- ※ 피진정인 란 등에는 알고 있는 내용에 한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근거 :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제8호



# 진정서 작성 방법



# 진정 처리 절차

## 1. 진정서 제출

- 관할: (제출 기관) : 사업장(지사,지점) 주소지의 노동지청
- 제출방법: 온라인, 방문제출, 우편제출

## 2. 출석 조사

- 2주 정도 이후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 출석통지서 수령
- 출석일자 조정 가능
- 진정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근로자대표 선정하여 1명이 출석 가능
- 근로자, 사업주 별도 조사 / 필요한 경우 동시 출석하여 대질조사
-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조서 작성



# 진정 처리 절차



## 3. 체불금품 확정

- 세전 금액 기준 ✓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발급 (노동부)

## 4. 시정지시

- 시정 지시서 회사에 전달  
 - 시정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 퇴직자용 [ ] 재직자용

발급번호								
① 체불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근로계약기간 (재직자인 경우)	[ ] 1개월 이상 [ ] 1개월 미만	임금액 (재직자인 경우)		시간당 ( ) 원			
	입급산정기간			장기입급금액				
비고								
② 체불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등록번호			
	법인 여부		[ ] 법인 [ ] 개인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실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법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체불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건설공사 해당 여부 [ ] 해당 [ ] 미해당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비고							
③ 체불 근로자명부 (원)	구분	계	일액	체불액 (월별)	총액 (월별)	총액 (기간)	재해보상 (재직자인 경우)	
	계							
	퇴직자 (퇴직자)	회계연도까지 12개월 이내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					
	재직자 (재직자)	회계연도까지 2개월 이내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					
		회계연도까지 3개월 이내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					
비고								





# 진정 처리 절차

## 5. 합의

- 합의서 작성 (합의금액, 합의대상이 되는 체불내역, 지급일, 지급방법, 취하, 민·형사 부제 소)

세전 금액이 기본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비용 공제됨)

세후 금액 or 실지급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유리  
노동부에서 합의서 작성해주지 않음!

## 6. 취하

- 체불임금 지급받으면, 취하서, 처벌불원서 제출

☆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다시 진정, 고소, 고발 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 지급 받기 전에 미리 처벌불원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 진정 처리 절차

(체불입금·합의금 등 금품 수령) 진정(고소장) 취하서

## 취하서

### 1. 당사자 및 민원접수번호

- 진정인(고소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피진정인(피고소인)

성명		전화번호	
사업체명		주소	

### 2. 취하사유 및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

- 취하사유: **직접기입** (예. 임금지급, 합의 등)

- 체불금품 수령내역

계	임금	회식금	기타금품
	✓	✓	✓

- 형사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 (직접기입) \_\_\_\_\_ (예. 처벌원하지않음)

\* 임금체불 사건에 있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반의사불벌죄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의사 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이 사건 처리결과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 . (취하인) 성명 \_\_\_\_\_ (인 또는 서명)



# 진정 처리 절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

## 처벌불원서

- 1. 귀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임금 등 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 2.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귀하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3. 귀하가 체불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1) 귀하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까?  
 (답) 네, 통보 받았습니다. 성명 \_\_\_\_\_ (인 또는 서명)

(질문2) 귀하는 앞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사건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할 수도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까?  
 (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명 \_\_\_\_\_ (인 또는 서명)

(질문3) 귀하는 어느 누구로부터 강요를 받지 않고 자발적인 결정으로 취하서를 제출한 것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성명 \_\_\_\_\_ (인 또는 서명)



# 형사처벌 절차

## 1. 검찰송치

- (진정) 시정 지시에 불응 → 범죄인지 → 검찰 송치 → 형사 기소 → 형사 재판
- (고소, 고발) 검찰 송치 → 형사 기소 → 형사 재판

## 2. 불기소

- (진정) 노동부 내사종결 - 재진정 //

(진정, 범죄인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 항고, 재정신청 불가

(고소, 고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 항고(고등검찰청), 재정신청(고등법원)

퇴. 재발



# 민사 절차

## 1. 법률구조공단 이용

-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론 가능  
(인지대, 송달료, 근로자 변호사비 무료)
- 패소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 지불  
(청구금액 5,000만원 기준, 변호사비 440만원)

## 2. 개별 민사소송

- 비용 개인 부담
- 재산 파악 및 가압류 먼저 진행



# 간이대지급금

## 1. 지급금액

항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3개월)	700만원	합계 최대 1,000만원
퇴직금 (3년)	700만원	

## 사업주요건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 6개월 이상 사업운영
- (퇴직자 : 퇴직일 기준)
- (재직자 : 마지막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 기준) (소송 또는 진정을 제기한 날 이전)
- 마지막 임금 확인되어야함 - 법원 판결 or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 근로자요건 - 퇴직자

### < 퇴직자 >

- ① **확정판결** 등에 따른 간이 대지급금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자

-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퇴직자



# 간이대지급금

## 근로자요건 - 재직자

### <재직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저소득 재직근로자 (시급기준, 최저임금의 110% 미만)

#### ① 확정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

: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재직 근로자

####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진정 등을 제기한 날 기준)





# 간이 대지급금

## 청구기한

### <퇴직자>

- ① 확정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  
: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재직자>

- ① 확정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  
: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주요건

사업주 요건	공통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장일 것 (근로자 1명만 있어도 대상임)</li><li>• 기업의 도산(법정관리, 법인파산, <u>사실상 도산</u>)이 있을 것</li></ul>
	재판상 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행하는 파산선고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것</li></ul>
	<u>사실상 도산</u>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일 것</li><li>•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li><li>•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li><li>• 상기 두 가지 요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u>사실상 도산</u>을 인정받을 것 //</li></ul>



## 근로자요건

###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사업장에서 퇴직할 것
- 퇴직기준일은 다음과 같이 결정
  -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즉, 퇴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도산 등 신청이 되어야 함
-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 퇴직자에 한함(재직자는 신청 불가능)



# 도산 대지급금

## 지급금액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 임금·퇴직금	220	310	350	330	230
✓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전체 평균 급여 350만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도산사건에 한해 국선노무사 선임가능.(간이대지급금 불가, 도산대지급금 중 법정관리 기업과 파산 사업장 불가)



감사합니다

